

의안 번호	2552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p>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2. 26.(목) 김도운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2. 26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3. 10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사무의 위탁, 구매 촉진,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및 제3조

5. 검토 사항

(1) 제정배경

-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(2) 내용검토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조례의 목적 명시
- 장애인, 장애인기업, 장애경제인에 대한 용어 정의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
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
-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 삽입

라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- 계획 수립 및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3가지 명시

마.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및 지원대상(안 제6조~안 제7조)

- 사업 지원 내용 5가지 명시,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명시
- 사업 지원 제외 대상 기업 6가지 규정 명시

바. 장애인기업의 우대(안 제8조)

-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우대 기준 4가지 근거 마련

사. 사무위탁(안 제9조)

-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 마련

아. 구매촉진 및 포상(안 제10조~제11조)

- 우선 구매 물품 제외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 구매 규정 명시
-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·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명시

6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자립과 장애인기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.
- 본칙 제 11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,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구청장의 책임을 정하고,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지원내용,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, 장애인기업의 우대사항과 사무위탁, 구매촉진과 포상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조례로서
-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, 같은 법 제8조의2의 지원내용을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, 관련 부서에서도 장애인기업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임.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근거법규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“장애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

2.“장애인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
가.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나.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(이하 이 조에서“장애인가용비율”이라 한다)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가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“장애경제인”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.

4.“공공기관”이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·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·정보·기술·인력·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